



의안 번호	제 10 호
의 결 연 월 일	2012. 4. 24.(화) (제 4 회)

의
결
사
항

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
점검·평가 방향(안)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제출자	국무총리실장 임종룡
제출 연 월 일	2012. 4. 24.(화)

1. 의결주문

- 「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·평가 방향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시행계획 점검·평가 방향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예측성을 높이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의 효과성·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
※ 근거 : 「지식재산기본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

3. 주요내용

(1) 기본 방향

- (정책컨설팅) 최초로 추진하는 시행계획임을 고려하여 수범사례 확산 및 장애요인의 신속한 제거 등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에 중점
- (업무부담 완화)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의 중복을 예방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최소화
- (평가 차별화)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방식 및 지표 설정 등에 반영
- (전문성·객관성)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평가단을 구성·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·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

(2) 점검·평가 대상

-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(24)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(16)의 관리과제 중에서 평가 과제 별도 선정*

* 「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지침」 수립('12.10월 이전) 시 확정

(3) 평가 지표

- ‘형성-집행-성과’ 등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유연하게 활용, 지식재산 정책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세부 평가지표* 마련

* 「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지침」 수립('12.10월 이전) 시 확정

(4) 점검·평가 방법 및 절차

- (중간점검)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체계적 관리 및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점검(현장점검 포함) 실시

- (평가방법) 기관별 종합평정이 아닌 과제별 등급화를 실시하고,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「정책평가단」* 구성

* 창출, 보호, 활용, 기반, 신지식재산, 지자체 등 분야에 따라 분과 구성·운영

- (평가절차) 분과별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평가단 조정회의에서 우수·미흡 사례 등 선정, 평가결과는 지재위 의결로 확정

(5) 평가결과 활용

- 우수사례는 공유·확산·표창 등 추진, 미흡사례는 개선통보·이행점검을 통해 각 기관이 겪고 있는 정책 장애요인 해소

⇒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확보

4. 향후계획

-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 ('12.7월)

-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('12.8월)

- '12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 수립 ('12.9월)

- '12년도 시행계획 평가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 ('13.3월)

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·평가 방향[안]

2012. 4. 24.



목 차



I . 2012년도 시행계획 점검·평가 개요	
① 목적 및 근거	1
② 기본 방향	1
II . 점검·평가 대상	
① 대상 기관	2
② 대상 과제	2
III . 평가 지표	
① 지표 체계	3
② 지표별 측정방법	3
IV . 점검·평가 방법 및 절차	
① 점검·평가 방법	4
② 평가 절차	4
V . 평가결과 활용 및 추진 일정	
① 평가결과 활용	5
② 추진 일정	5
<붙임>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	6

1

목적 및 근거

- (목적)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·평가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효율성·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
- (법적근거) 「지식재산 기본법」(제10조)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토록 규정
 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한 후,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

2

기본 방향

- (정책컨설팅)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로 추진하는 시행계획임을 고려하여 평가
 -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수범사례 확산 및 애로사항 발굴 등을 통한 장애요인의 신속한 제거 등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에 중점
- (업무부담 완화)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의 중복을 예방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최소화
- (평가 차별화)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방식 및 지표 설정 등에 반영
- (전문성·객관성)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평가단을 구성·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·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

II

점검·평가 대상

1

대상 기관

- 「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」의 추진 기관인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

2

대상 과제

- (과제분야) 원칙적으로 「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」의 핵심과제인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평가
 - * 단,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외라도 평가대상 과제와 연계가 필요한 과제는 포함
 - *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에 속하는 관리과제가 없는 기관의 주요 과제도 포함
- (과제수준)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과제(209) 중에서 평가 과제 선정
 - 최종 평가대상 과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「2012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」 수립('12.10월 이전) 시 확정

분 야	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	관리과제 수	
		중앙부처	지자체
창 출	1.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	16	-
	2. 차세대 콘텐츠·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	9	-
보 호	3.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	24	-
	4.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	6	-
	5.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	8	-
활 용	6.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	6	-
	7.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	11	-
기 반	8.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	9	6
	9.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	3	13
	10.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	1	16
	11.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	4	58
신지식재산	12.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	7	12
합 계		104	105

Ⅲ

평가 지표

1

지표 체계

-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(특정평가)의 기본체계를 활용하되, 지식재산 정책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구성
 - ‘정책 형성-집행-성과’ 등 정부업무평가의 기본지표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 마련
 - 모든 과제에 적용되는 ‘공통’ 지표와 별도로 기관별·과제별 특성을 반영한 ‘특성’ 지표를 구성·적용하는 방안도 검토

* 중앙행정기관-지자체,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등

< 평가지표 체계(안) >

구 분	평가 항목	평가 기준
정책형성 (30)	1. 계획수립의 적절성(15)	1-1. 사전분석·의견수렴의 충실성(5) 1-2.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(10)
	2. 정책기반 확보 수준(15)	2-1. 추진체계의 충실성(5) 2-2. 자원 배분의 적정성(10)
정책집행 (35)	3. 추진과정의 효율성(25)	3-1. 추진일정의 충실성(10) 3-2. 유관기관·정책과의 연계성(10) 3-3.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(5)
	4. 정책확산 노력 수준(10)	4-1. 정책소통·홍보·교육의 충실성(10)
정책성과 (35)	5. 정책성과 및 효과성(35)	5-1. 성과목표 달성도(20) 5-2. 정책 효과성(15)

2

지표별 측정방법

-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가중치, 지표별 측정방법 등은 「2012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」 수립 시 확정
 -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·전문가 의견수렴 등 추진

IV

점검·평가 방법 및 절차

1

점검·평가 방법

- (추진상황 중간점검)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체계적 관리 및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추진상황에 대한 **중간점검(현장점검 포함)** 실시
 - **핵심과제***를 선정하여 추진실적을 토대로 애로사항 및 문제점 점검**
 - *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별 2-3개 관리과제 (잠정)
 - ** '12.7.31일까지 기관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8.31일까지 중간점검 완료
- (과제평가) '12년은 기본계획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**과제별로** 평가결과를 등급화하고, **기관별 종합평정을 실시하지 않음**
 - 평가대상 **과제별로** 최우수-우수-보통-미흡(예시) 등급 부여
- (평가단)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·전문위원, **평가전문가** 등으로 「**정책평가단**」 구성
 - 정책평가단은 세부 정책분야에 따라 **분과를** 구성하여 운영 (예시 : 창출, 보호, 활용, 기반, 신지식재산, 지자체 등)

2

평가 절차

- 정책평가단이**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자료를 일차적으로 점검·분석·평정하고, **평가결과(안)**을 작성
 - 평가결과(안)을 토대로 **정책평가단 조정회의***에서 우수·미흡 사례 선정 등 평가결과 조정·도출
 - * 정책평가단장과 분과장 등으로 구성
 - 평가결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**상정·심의**하여 확정

V

평가결과 활용 및 추진일정

1 평가결과 활용

- (정책환류)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·집행에 반영
 -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확보
- (인센티브) 우수사례는 관계기관에 공유·확산함으로써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 등 정책성과 제고의 기회로 활용
 - 평가결과 과제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* 등 추진
 - * 구체적인 표창 절차 및 방법은 「2012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」 수립 시 확정
- (이행점검 및 장애요인 해소) 미흡사례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개선필요 사항을 제시하고, 해당기관은 개선계획 수립
 -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이행상황을 지속점검하고,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이 겪고 있는 정책 장애요인 해소 도모

2 추진 일정

구 분	세부 내용	일 정	대 상
◆ 추진상황 중간점검	·상반기 추진실적 제출	~'12. 7.31	관계기관
	·상반기 추진상황 점검	~'12. 8.31	지 재 위
◆ 세부평가계획 수립	·'12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 수립·시달	~'12. 9.30	지 재 위
◆ 추진실적 평가	·'12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	~'13. 1.31	관계기관
	·추진실적 점검·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	~'13. 3.15	지 재 위
◆ 평가결과 활용	·개선의견 통보 및 개선계획 수립·제출	~'13. 4.15	관계기관
	·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	수 시	지 재 위

1

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지식재산권 중심의 R&D 관리					
① 기획단계 특허정보 활용 확대	○	○	○		특허청, R&D부처
② 기술가치 향상 우수사례 확산 및 IP경영진단모델 확대	○	○	○	○	국과위, R&D부처
③ 질적평가 강화 및 추적평가 방안·지침 마련		○		○	국과위, R&D부처
②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					
① 표준특허 획득 지원	○	○	○	○	특허청, 지경부, 방통위
② 표준특허 협의체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		○		○	특허청, 지경부, 방통위
③ 표준특허 창출 기반 확충	○	○	○	○	특허청, 지경부, 방통위

2

차세대 콘텐츠·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					
① 융복합·3D콘텐츠 제작 지원	○	○	○	○	문화부, 방통위
② 콘텐츠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	○	○	○	○	문화부
③ 콘텐츠분야 금융투자 활성화	○	○	○	○	문화부
④ 방송 콘텐츠·기술 개발 지원	○	○	○	○	방통위
②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					
① 창의 R&D 프로그램 신설	○				지경부
② 소프트웨어뱅크 설립 추진		○			지경부
③ 해외 진출 지원 및 소프트웨어산업 리더 양성	○	○	○	○	지경부
④ 방송통신 핵심 SW 기술 개발	○	○	○	○	방통위

3

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					
① 기존 웹하드, P2P 등록 완료		○			방통위
② 웹하드 등록제 이행점검반 구성·운영		○	○	○	방통위, 문화부
③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 만화·SW 시험 모니터링				○	문화부
④ 취약시간대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	○	○	○	○	문화부
⑤ 위조상품 자동 검색 강화	○	○	○	○	특허청
⑥ 특별 집중 합동 단속 실시		○			법무부, 문화부, 특허청
②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기반 조성					
① 산업보안관리사,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 추진		○	○	○	지경부
② 대학내 산업보안학과개설 추진		○	○	○	지경부
③ 컨퍼런스 개최 및 기술보호의식 캠페인 등	○	○	○	○	지경부
④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확대	○	○	○	○	중기청
⑤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	○	○	○	○	문화부, 외교부, 특허청
③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					
①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 로드맵 수립		○			법무부
② 디지털 포렌식 특사경 협의체 구성		○			법무부
③ 단속인력 공통교육과정 개발		○			법무부
④ 수사(단속) 인력 전문 교육 정례화				○	법무부

4

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의 현황파악 및 대안 검토					
① 연구 용역 시행	○	○			지재위, 법무부, 특허청
② 관련 부처 TF 구성을 통한 대안 검토		○	○		지재위, 법무부, 특허청
③ 개선안 마련			○	○	지재위, 법무부, 특허청

5

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

추진 내용	추진 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특허소송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검토					
① 특별전문위원회 설치	○				지재위, 법무부, 특허청
②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해외사례 조사	○	○			지재위, 법무부, 특허청
③ 개선방안 마련		○	○		지재위, 법무부, 특허청
④ 사법부와 제도개선 논의 및 입법안 마련			○	○	지재위, 법무부, 특허청

6

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

추진 내용	추진 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기술평가인증 및 보증제도 활성화					
①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신규참여 금융기관과 개별 협약				○	금융위
② 창의자본 조성 확대					
①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			○	○	지경부
② 신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제안		○	○		지경부
③ 지식재산 비즈니스 민간 투·융자시스템 확충					
① IP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		○			지경부
② 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	○	○	○	○	문화부
③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	○			○	문화부

7

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탈취·유용 행위 예방					
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수집	○	○	○	○	공정위
②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실시		○	○	○	공정위
③ 공정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 보급	○	○	○	○	공정위
②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					
① 임치금고 확충 및 임치수수료 사용 근거규정 마련			○	○	중기청
② 기술보호 관련 전문 상담 실시	○	○	○	○	중기청
③ 대·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협력 유도					
① 기부채납된 기술 선별평가 및 권리이전		○	○		지경부
②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실시	○	○	○	○	공정위
③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				○	공정위
④ SW 및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					
① 표준계약서 마련(SW 분야)	○	○	○	○	공정위
② 표준계약서 마련(콘텐츠 분야)					문화부

8

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					
① 지역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실시		○	○	○	지자체
② 범국가적 홍보전략 수립·추진		○	○	○	문화부, 지경부, 특허청
② 親지식재산 환경조성					
①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			○	○	지재위, 문화부, 특허청
② 정규교과 내 지식재산 관련내용 반영 확대 추진			○	○	교과부, 문화부
③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			○	○	교과부, 문화부, 특허청

9

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협력력연구 협약 개선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					
① 직무발명제도 설명회·컨설팅 수행	○	○	○	○	특허청
②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		○	○	○	특허청
③ 제도 홍보 및 포상			○	○	특허청
④ 지방 확산			○	○	지자체
② 산학협력력연구 협약 개선					
① “산학협력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” 구성·운영	○	○	○	○	지재위, 교과부, 지경부
② 산학협력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			○	○	지재위, 교과부, 지경부

10

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·개정안 마련					
① 특허청 등 관계기관 소관 법령 개정	○	○	○	○	지재위, 특허청
②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					
① 중앙-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	○	○	○	○	지재위, 지자체
② 정부-민간 네트워크 구축		○	○	○	지재위
③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		○	○	○	지자체

11

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					
①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정비		○	○	○	지자체
②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					
①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			○	○	특허청
② 특허종합컨설팅 추진	○	○	○	○	특허청, 지자체
③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		○	○	○	특허청, 지자체
④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		○	○	○	지경부

12

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

추진 내용	추진일정				소관 기관
	1/4	2/4	3/4	4/4	
① 고부가가치 신제품 육성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					
① Golden Seed Project 추진	○	○	○	○	농림부
② 해조류 신제품 관리기반 조성	○	○	○	○	농림부
②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·확보 및 관리·활용기반 구축					
① 자생생물 조사·발굴		○		○	환경부
②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·구축	○		○	○	환경부
③ 전통자원 발굴·기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					
① 전통지식 정보 표준화		○	○	○	농림부
② 「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	○	○	○	○	문화재청
④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					
①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	○	○	○	○	농림부, 지자체
②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방안 등 추진계획 수립		○	○	○	문화부